

## 여권 분실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※ 뒤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한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대리인<br>(대리 신고의 경우<br>에만 작성합니다) | 성명(한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고인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여권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권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간 만료일           |     |
| 분실경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시(추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소(추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주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물 등 세부주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실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본인 분실                  | [ ] 절도·강도 등 범죄피해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실 후<br>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시 목격자<br>(목격자가 있는<br>경우에만 적습니다) |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              | 연락처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실 사유에 대한<br>증명자료                | ※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최근 5년간<br>여권 분실 횟수<br>및 경위     | [ ]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2회                     | [ ] 기타( 회)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첫 번째 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 번째 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의 추가 분실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
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,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**외교부장관**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신고인<br>제출서류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(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인감증명서,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(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·날인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: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나.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: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다. 「민법」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: 법원의 심판서 및 결정서 사본 등 법정대리인의 친권 상실,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분실 신고를 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</li> </ul> </li> </ol> | 수수료<br><br>없음 |
| 대리인<br>제출서류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(법정대리인이 여권 분실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</li> <li>법원의 심판서·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신고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li>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(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·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li> </ol>   |              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|               |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**유의사항**

- 이번 여권 분실 신고는 "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"란의 분실 횟수 및 경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「여권법」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,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(2년 또는 5년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여권법」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**처리절차**

